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5. . . (제 회)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에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활용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수험부담 완화 등을 위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등 채용시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공직적격성평가 별도 시행근거 마련(안 제4조, 제5조의2, 제51조, 제52조)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활용이 가능하도록 공직적격성 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공직적격성평가 시험과목 대체(안 제7조, 제31조, 제31조의2, 제47조, 별표3, 별표3의2, 별표4, 별표4의2)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등을 별도 실시하는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으로 대체함.

다. 9급 공채 한국사 과목 검정시험 대체(안 제7조, 제25조, 별표4)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제2항(제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공직적격성평가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공직적격성평가)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공직적격성평가”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직적격성평가는 평가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심화와 기본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각 평가별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화: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2. 기본: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③ 공직적격성평가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공직적격성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제1호”를 “다음”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다.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포함한다)

라.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4. 다음 각 목의 시험의 제1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
단영역, 헌법 과목: 별표4의2에서 정한 공직적격성평가

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다.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포함한다)

라. 제8조제4항에 따라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
역으로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시험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제1호의 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의 1
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
험을 포함한다):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별표 4에서 정

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
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그 나머지 과목의 총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2.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
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그 나머
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제25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총득점”을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으로, 후단의 “총득점”을
“해당 총득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후단 중 “각 과목”을 “한국사과
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으로, 후단의 “총득점”을 “해당 총
득점”으로 한다.

3.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그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
부터 차례로 결정

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지 않는 경우: 각 과
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
람부터 차례로 결정

제31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
항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호의 시험”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험”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험기일”을 “시험기일(제1차시
험 과목의 전부가 제7조제1항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되는 경우 제1차시
험의 시험기일은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용시험”을 “임용시험(제5조의2에 따
른 공직적격성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임용시험”을 “시험”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전단 중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 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포함한다)의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 이상
이 되는 해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채용시험 및 선발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으로, “제1차시

험 시행예정일 전날”을 “해당 채용시험 및 선발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
로 한다.

별표 3의2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의 인정기간은 다음 각 목과 같으며, 기준점수
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의2 비고 제1호에 각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
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
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나.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상당하는 외무영사 직렬 외무공무원 공
개경쟁채용시험: 제2차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
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2차시험 시행예
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별표 4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험의 종류		기준등급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7급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포함)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2급 이상	3급 이상

부 칙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의 인정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이 경우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 비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7급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해당 채용시험 및 선발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
2.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

별표 4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의2]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과목을 대체하는

공직적격성평가의 종류(제7조제1항 관련)

대상시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7급(7급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 포함) 공개경쟁채용시험	제8조제4항에 따라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으로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시험
과 목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대체하는 시험의 종류	공직적격성평가 심화	공직적격성평가 기본	공직적격성평가 기본

비고

1. 위 표에서 정한 공직적격성평가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정한 공직적격성평가는 대상시험의 원서접수 연도에 실시되는 시험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소명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7조, 제25조, 제31조, 제31조의2, 제47조, 별표3, 별표3의2, 별표4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① ~ ⑤ (생략)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해당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 4. (생략) <u><신 설></u>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제5조 제2항(제5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공직적격성평가를 포함한다) ----- ----- -----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의2(공직적격성평가)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공직적격성평가”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직적격성평가는 평가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심화와 기본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각 평가별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화: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2. 기본: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③ 공직적격성평가에 응시하려

제7조(시험과목) ①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1. · 2. (생략) 3. 제1호 각 목의 시험의 제1차 시험 중 한국사 과목: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는 사람은 시험실시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공직적격성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7조(시험과목) ①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다음 ----- ----- ----- -- 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다.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 라.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4. 다음 각 목의 시험의 제1차시
---	--

②·③ (생략) 제25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합격 결정) 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7급 공개경쟁채	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과목: 별표4의2에서 정한 공직적격성평가 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다.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 라. 제8조제4항에 따라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및 상황판단영역으로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시험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합격 결정) 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제1호의 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에		용시험(이에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의 제1차시험에서는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상당하는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과목과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그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2.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그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	---	--	--	--

②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제24조제2항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과적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 2. (생략)

<신 설>

②

1. 2. (현행과 같음)

3.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등급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그 나머지 과목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
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
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③・④ (생략)

⑤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최종합격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접시험의 등급과 제2차시험 성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 단서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하되, 총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2차시험

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지 않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한국사과목을 제외한 나
머지 과목의 총득점-----
-----, 해당 총득점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8215